

◎서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3-2호

어선중개업 행정처분(영업정지 6개월) 공시송달

2023년 01월 26일

서해어업관리단장

어선중개업 행정처분(영업정지 6개월) 공시송달

「어선법」 제31조의2(어선중개업 등록 등)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 안내를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1. 처분대상

등록증 번호	상호명	성명	주소지
2020-W034	현대선박	이*승	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

*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

2. 처분 내용 : 「어선법」 위반 어선중개업 영업정지(행정처분 기준 3차이상 위반)

3. 처분 기간 : ' 23. 1. 6 ~ ' 23. 7. 4(어선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)

4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: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

5. 처분의 법적 근거 : 「어선법」 제31조의2,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

6. 그 밖에사항

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담당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최진영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(Tel. 061-240-7991). 끝.